

#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6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8. 17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점용료 부과 금액이 5,000원 미만인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혜택 제공
-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납부 후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부과를 해소

## 2. 주요내용

- 가. 5,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조항 신설  
(안 제3조제3항)
- 나.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  
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 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, 법무통계담당)
- 라. 기타사항
 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규제삭제(안 제4조)
  - (3) 입법예고
    - (가) 예고기간 : '15. 8. 01. ~ 8. 20.
  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 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4조(점용료의 반환)**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점용료의 납부)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점용료의 납부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4조(점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분을 되돌려 줄 수 있다.</p> <p>1.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</p> <p>2.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3.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</p>	<p>제4조(점용료의 반환)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